

인천지방법원 2018. 1. 23 선고 2017가단230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

담당변호사 김기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8. 1. 9.

판 결 선 고 2018. 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[별지 1] 기재 부동산 위에 건축된 [별지 3] 도면 표시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46㎡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박세영

별지